

-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-

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

설치근거

-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제30조(행동강령의 운영)
- 권익위 「공공기관 대상 청렴옴부즈만 설치·운영 계획 마련」('09.12)

구성 및 임기

- 구 성 : 3명(대표옴부즈만 1인)
- 임 기 : 2년(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직무 및 권한

- 부패 취약부분에 대한 감시·조사·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
- 주요사업의 발주·입찰·낙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과정에서
관련 감시·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

-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-

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

공단업무 전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·독립성·청렴성을 바탕으로 특히,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·조사·평가 활동을 위한 「청렴옴부즈만」을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코자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.

I 추진 배경

- 추진근거 :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(감사탐-1755호)
-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
- 부패 취약부분에 대한 감시·조사·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
- 전문성·독립성·청렴성을 근간으로 내부감사 제도와 상호보완

« 「청렴옴부즈만」이란? »

- ▶ 옴부즈만(Ombudsman)은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한 방법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태동. 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며, 행정감찰관, 호민관, 민정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으며,
 - ▶ 청렴옴부즈만(Integrity Ombudsman)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, 독립적으로 부패 방지, 공사, 용역, 구매 등 계약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, 공정성 등을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임.
- ※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사업청, 서울시, 철도공사, 철도시설공단, 조폐공사 등에서 「청렴(계약)옴부즈만」 도입 시행 중에 있음.

Ⅱ 지위 및 역할

-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, 감사·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함
- 주요사업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합목적성 확인
 - ▶ 사업(건설, 용역, 구매)에 대한 ‘청렴계약’의 이행여부
 - ▶ 계약이행 과정상 각종 부조리(불법적 금품수수, 부실시공 등) 모니터링 등
- 불합리한 제도·관행·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
- 부패 취약부분에 대한 감시·조사·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

Ⅲ 구성 및 임기

 구 성 : 3명(대표옴부즈만 1인)

연번	성명	주요 약력	위촉기간	비고
1	○○○	전, 감사관련 공무원	2012.10. ~ 2014.09.	위촉일로부터 2년
2	○○○	현, 변호사	"	
3	○○○	현, 회계사	"	

※ 자격 :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
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,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등

 임 기 : 2년 (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 위촉일 : 2012년 10월 초순경

IV

직무 및 권한

- 사업의 발주·입찰·낙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,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·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
-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 권고
-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-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, 옴부즈만 회의 참여
-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
- 단, 행정심판, 소송 및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

V

청렴옴부즈만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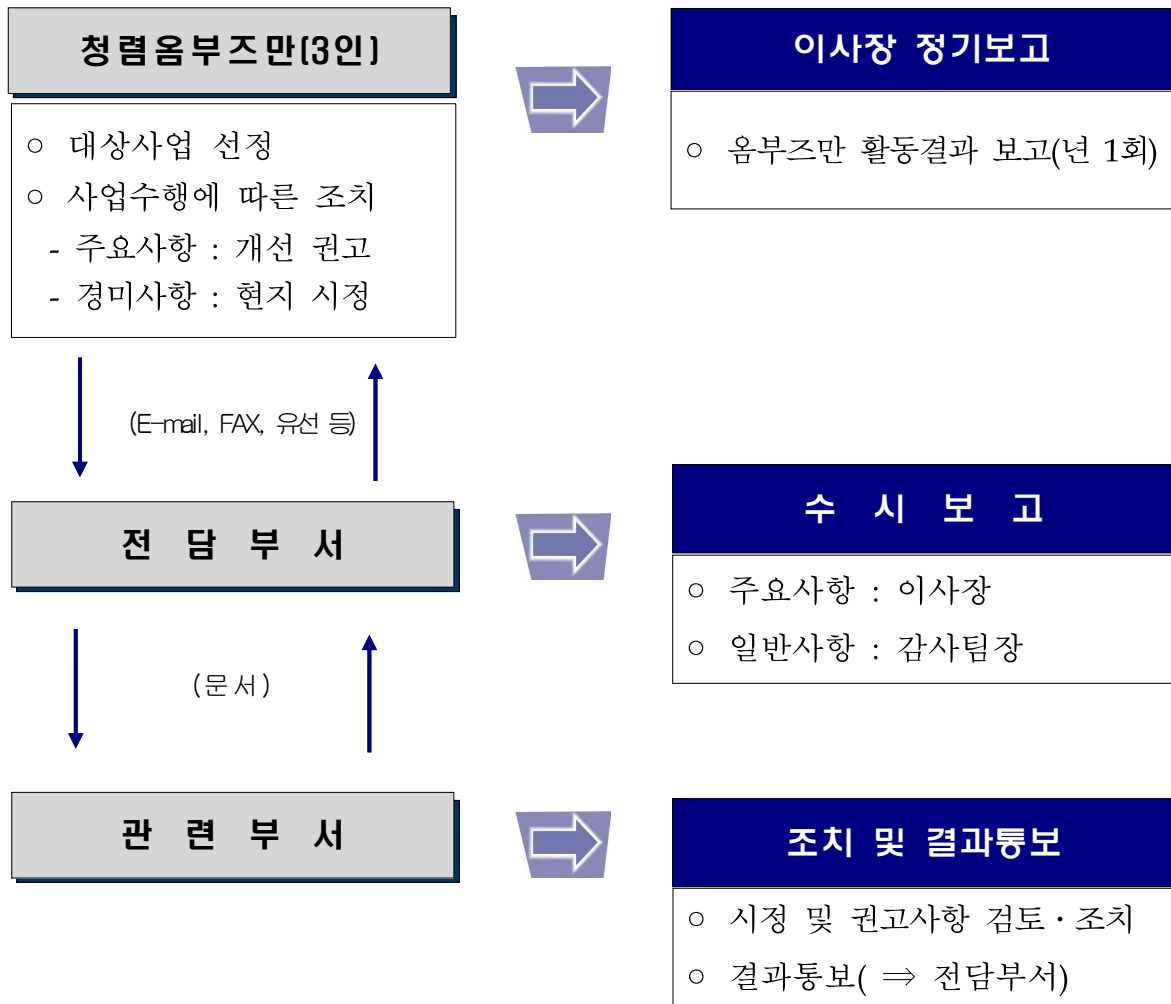
청렴옴부즈만 회의(운영협의회)

- 전원이 모여서 협의·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
- 대표옴부즈만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
-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·애로사항의 해소방안 협의
-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직원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 협의
- 기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대표옴부즈만이 부의하는 안건

※ 옴부즈만운영협의회 : 옴부즈만과 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7인 이내 구성

업무수행 절차

- 전담부서 지정 · 운영 : 감사팀
- 청렴옴부즈만 관련 업무 추진체계



대상사업 선정, 사후조치 등 업무상 필요할 경우 옴부즈만과 관련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협의회(회의) 별도 구성·운영 (소집 : 청렴옴부즈만)

※ 다만, 옴부즈만이 관련 부서로 직접 자료요청 등 업무협조를 구할 경우,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고 관련사항을 전담부서에 별도 통보

청렴옴부즈만 지원

- 옴부즈만 회의, 현장 활동, 협의회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·여비 등 지급
- 운영협의회(회의) 참석 수당지급

활동결과 제출

- 옴부즈만은 매 건별 활동결과를 완료 시마다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이사장에게 제출
-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이사장에게 제출 및 별도 이사장 요구 시 활동결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